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구 미 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20. 8. 27.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40호)
- 나. 첨단 ICT 기반 스마트제조시스템을 통한 사업화 촉진으로 지역의 제조혁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한 중소기업 기술자립화 형성
- 다.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연대상기관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1) 설립일 : 2005. 9. 1.
 - (2) 조직 및 인원 : 1부 11본부 11실 16팀, 172명
 -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 (4) 기관 주요사업
 - 1)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 2)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3)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2) 사업기간 : 2021년~2031년(1+2단계)

(3) 출 연 금 : 금14억원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단계					2단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이후
계	434.58	72	57	39	29.33	31.25	46	40	120
국 비	265.15	60	40	20	16	23.15	26	20	60
도 비	47.83	3.6	5.1	2.7	4	2.43	6	6	18
시 비	121.6	8.4	11.9	16.3	9.33	5.67	14	14	42

※ 국·도비는 각 기관에서 출연

(4)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북도, 구미시

(5) 수행기관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립금오공과대학교

(6) 사업내용

1)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① 특화분야 중심 양방향 기술발굴 및 연계

② 기술이전 사업화 전주기 지원

③ 기술기반 창업 지원으로 기술특화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2) 이노테크 기업육성 : 네트워크 운영, 기업 육성 등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다. 1단계 사업 성과

성과지표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사업내용
기술이전 (건)	204	37	37	34	61	35	기술핵심기관 보유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매칭 건수
연구소 기업(개)	54	8	11	10	14	11	사업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수
신규창업 (개)	70	11	11	16	16	16	사업을 통한 창업기업 설립 수
일자리 창출(명)	1,350	188	295	397	205	265	사업지원기업, 연구소기업,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인원
매출액 (억원)	3,067.6	122	846	930.6	415	754	사업지원기업, 연구소기업, 창업기업 매출액
투자연계액 (억원)	326.88	6.65	65	63.23	118	74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투자 및 투자연계 금액

라. 근거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58조 및 제58조의2
- (3)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 제9조, 제10조
- (4)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3.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경북도 → 과기부) : '19. 9. 27.
-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의결(연구개발특구위원회) : '20. 7. 27.
-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 '20. 8. 27.
- 1단계 1~5차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 시행 : '21. 3. 10. ~ '26. 3. 9.
-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2. 6. 22.
- '22년 연차평가 **우수등급** 선정(과기정통부 주관) : '23. 5.
- '23년 연차평가 **최우수등급** 선정(과기정통부 주관) : '24. 6.
- 2단계 강소특구 특화발전 지원 **'타당'**(과기정통부 주관) : '25. 5.
- '24년 연차평가 **최우수등급** 선정(과기정통부 주관) : '25. 7.
- 2단계 1차년도 사업 시행 : '26. 3. ~ '27. 3.
- '25년 연차평가 **보통** 선정(과기정통부 주관) : '26. 5.
- 2단계 2차년도 사업 시행 : '27. 3. ~ '28. 3.

4. 기대 효과

- 가. 유망기술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통해 성과 확산 및 특구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술 - 창업 - 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
- 나. 로봇·방산·반도체 등 특화분야 기업의 전주기를 지원하여 지역 핵심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
- 다.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 (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가. 첨단·지식기반·뷰티·탄소 및 물산업

나. 부품·소재산업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육성사업

2. 문화 확산사업

3. 혁신역량 등 강화·활성화사업

제9조(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보조)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강소특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소특구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소특구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사항
4.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강소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강소특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강소특구 지원 사업) 시장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과학기술 진흥 사업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활용 지원 사업
4.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5. 첨단기술기업 창업·유치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
6.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7.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9.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1단계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공공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기반 연구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육성
- 2단계에서는 특화분야 기업의 공공기술 상용화와 고도화를 촉진하고, 양적·질적 성장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이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가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1단계 (2021~2025년도) 사업 세부 비용에 준하여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억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합계
세출	14	14	14	14	14	7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억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합계
시 비	14	14	14	14	14	7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신산업정책과 산학지원팀 최지연(☎480-61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구미시 출연금 비용 추계

(단위:억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총 계	14	
지역핵심기술 특화성장지원	9.55	○ 구미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6개社) : 1.2 ○ 구미기업 제품개발지원 (17개社) : 3.4 ○ 구미기업 Value Chain 지원 (2개社) : 1 ○ 구미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및 인증 지원 (36개社) : 0.54 ○ 기업성장지원 사업 운영비 : 3.41
강소특구 해외진출 지원	1.6	○ 구미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20개社) : 0.6 ○ 해외협력(공동연구, 실증 등) 지원 : 1
기업 성장 협력체계 운영	1.8	○ 특구 협력 프로그램 및 협의체 운영 : 0.3 ○ 산학공동연구, 신규과제 기획 등 지원 : 1.5
간접비	1.05	○ 특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용 : 1.05

소 관 부 서		신산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신 주 선
	팀 장	이 원 남
	담 당 자	최 지 연 (480-6173)